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 추진방안

이준원

I.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S&HMS) 개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이란 사업주가 기업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하며, 경영자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실행결과를 자체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안전보건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예방투자순위를 결정하는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구축될 때 생산과 안전보전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2.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ISCO 2000 프로그램이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기법인 영국의 BS 88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한국식화하여 공단에서 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평가요원이 당해 사업장이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단 이사장이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KISCO 2000 프로그램』 용어의 의미

- KISCO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 2000 :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시행하는

- PROGRAM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평가 및 인정서 발급까지의
제반 절차를 말함

3. 선진국의 관련 제도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고예방규정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안전보건정책을 기업경영의 주요 부분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평가분석을 통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 HSE(보건안전청)의 안전보건경영기준에서도 사업주 의무를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고예방대책수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 정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3년부터 자율안전관리제도인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996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인 BS 8800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1997년 품질·환경·안전보건을 통합한 통합경영시스템인 IMS(Integrated Managemen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 4월15일에는 BSI, DNV, BVQI, LRQA, NSAI 등 세계 13개 컨설팅기관들이 참여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ISO 9001, ISO 14001 등에 적합하게 구성한 OHSAS(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을 제정하였다.

또한, OHSAS 18001의 실행지침인 OHSAS 18002를 금년 7~8월중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계규격의 제정 및 인증추진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도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은 껍이나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4. 공단과 BSI와의 상호인정협정체결

금년 6월 28일 공단과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공단에서는 KISCO 2000 프로그램에 따라, BSI에서는 BS 8800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상태에 대한 인정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인증서의 병행발급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양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기술협력의 확대 및 기술인력 교류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체계가 미흡한 국내 사업장에 대하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Know-How)를 기술지원,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전수시키므로써 수준 높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II. 초일류기업 인증제도등과의 비교

1. 개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 구축지원 또는 인증해주는 관련제도 또는 사업으로는 노동부예규인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노동부예규 제 424호, 1999. 5. 18 개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초일류기업 인증제도와 산재감소목표관리의 일환으로 사업장 책임전담관리를 위해 노동부에서 『'99년도 노동부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사업과 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기준(BS 8800)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규칙인 『KISCO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공단규칙 제270호, 1999.6.24 제정)』에 의거 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KISCO 2000 프로그램이 있다.

2. 관련제도의 특징

『초일류기업 인증제도』는 초일류기업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신청을 받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수준정도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시 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 초일류기업 인증제도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컨설팅) 과정이 없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사업』은 50인이상 제조업체를 의무대상으로 사업장을 등급 구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하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노동부 사업임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율신청을 받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 완료시 이를 평가하여 공단 이사장이 프로그램 구축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KISCO 2000 프로그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정착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상태까지 평가,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공단 주관 업무임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제도 비교

구 분	초일류기업인증	사업장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KISCO 2000 프로그램
시행주체 업무주관 관련근거	노동부 노동부장관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노동부예규 제424호, 1999.5.18 개정)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장 '99 노동부 사업계획	공 단 공단 이사장 KISCO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공단규칙 제270 호, 1999. 6 .24 제정)
도입배경	미국자율안전관리활동 프로그램(VPP제도)	산재감소 목표관리를 위한 사업장 책임 전담관리	영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BS 8800)
대 상 사업장	초일류기업인증 신청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KISCO 2000 프로그램 참여 신청사업장 건설업제외 전업종
업 종 시행방법 수수료	전업종 자율(임의신청) 유 료	제조업 강제(의무대상) 무 료	건설업제외 전업종 자율(임의신청) 무 료
업무절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장</div> <p style="text-align: center;">↓ 자율신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평가기관</div> <p style="text-align: center;">↓ 평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초일류기업인 증 (노동부장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장</div> <p style="text-align: center;">↓ 자체평가 및 평가표 보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방노동관서</div> <p style="text-align: center;">↓ 검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장 등급구분관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장</div> <p style="text-align: center;">↓ 자율신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공 단</div> <p style="text-align: center;">↓ 시스템 구 축기술지원 및 평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프로그램 인정 (공단 이사장)</div>
	※ 평가기관(3개기관)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 대한산업안전협회 - 한국능률협회	※ 사업장 등급구분(4등급) - 최우수 - 우량 - 보통 - 불량	※ 평가분야(3분야) - 안전보건경영체제 - 안전보건활동수준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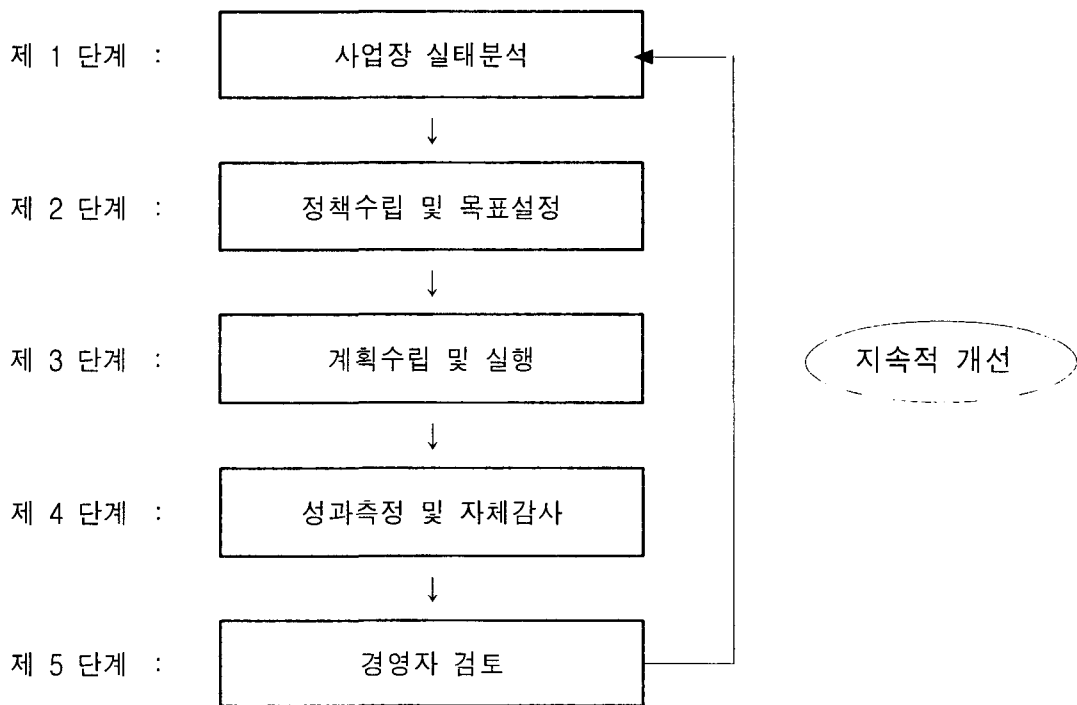
Ⅲ. KISCO 2000 프로그램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성요소

1. 일반원칙

KISCO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성요소는 BS 88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요소들은 사업장내의 모든 활동과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각 구성요소의 적용에 관한 세부방법과 이행은 사업장의 규모, 경영목적, 경영환경 및 잠재유해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성요소는 사업장 실태분석,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목표설정,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성과 측정 및 자체감사, 경영자 검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성요소



※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성요소 세부기준 및 내용은 KISCO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 (공단규칙 제270호, '99.6.24일 제정) 제2장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성요소 참조

IV. 프로그램 인정업무 운영절차

1. 프로그램 참여신청 요건 및 절차

1) 프로그램 적용대상

이 프로그램은 제조업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적용대상 업종은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기타산업에 적용되고 건설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프로그램 참여신청요건

프로그램 참여신청사업장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수준자체 평가표에 따라 신청일 이전 3월이내에 1회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 참여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참여신청 제출서류 : 각 1부

프로그램 참여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 ② 신청일 이전 3월이내에 노·사 대표가 합동으로 평가한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수준 자체평가표
- ③ 안전보건경영조직표

4) BSI의 BS 8800 인증서 병행발급 신청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가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상호인정협정을 '99년 6월 28일 체결함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신청 사업장에서 BSI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의 인정 희망범위에 외국 인증기관 인증서의 병행발급을 신청하면 공단과 BSI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인증서를 동시에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프로그램 참여 합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프로그램 참여 합의에 필요한 프로그램 참여 합의서를 공단과 신청인이 작성하고 프로그램 진행절차를 상호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 및 기술지원

1)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

프로그램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시에는 안전보건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의 확인 과 사업장 현장에 대한 실태분석평가를 동시에 확인한다.

사업장 실태분석평가결과서는 프로그램 인정평가지 사용하는 프로그램 인정평가결과서의 세부항목별 평가표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후에는 실태분석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술지원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결과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건수 과다등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공단 직원이 외의 자로서 컨설팅요원 자격 및 경력 기준이상인 자를 컨설팅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술지원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 결과 보완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후 현지 출장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3. 인정평가 실시

1) 인정평가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결과 또는 기술지원 후 인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프로그램 인정평가 항목에 따라 인정평가를 실시한다.

인정평가의 실시는 평가요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바, 평가요원은 KISCO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한다.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병행 발급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을 추가로 평가하며, 외국 인증기관의 평가요원이 인정평가에 참여 할 수 있다.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추가평가는 외국 인증기관의 평가요원을 인정평가에 참여시켜 실시하는데, 이때 평가대상 서류의 작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평가지에는 사업장 업종, 규모, 기타 특성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요원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팀 이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요원 자격 및 경력기준 이상인 자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인정평가 실시기준

인정평가실시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평가일의 결정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결과 또는 기술지원 후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공단에서 판단할때 신청 사업장과 협의하여 인정평가일을 정한다.

② 인정평가 기간 및 평가요원수

사업장 규모별, 업종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과 같이 정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신청사업장과 협의하여 평가일수, 평가요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인정평가요원수 및 평가일수 기준

50인미만	50인~300인미만	300인~1000인미만	1000인이상
2MD	4MD	6MD	8MD

③ 인정평가팀의 구성

인정평가팀은 인정평가기간 및 평가요원수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구성한다. 이때에는 사업장 실태분석 평가에 참여한 평가요원을 참여시키고, 필요시 지역본부의 전문기술위원팀을 참여토록 하여 구성한다.

평가요원 양성교육 및 자격 발급 이전까지는 평가요원 자격 및 경력기준 해당자 중 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경영평가』 전문과정을 이수한 직원을 지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인정평가분야 및 항목

인정평가시에는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7개 항목),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20개 항목),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분야(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세부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 : 주로 서류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함
-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 : 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련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함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분야 : 공장장, 관리자등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함

4. 인정여부의 결정 및 프로그램 인정서 발급

1) 인정여부의 결정

프로그램 인정은 인정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최근 3년간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여한다.

공단 지도원에서 인정평가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신청서 및 인정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지도원에서 인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명단을 보고받거나 지역본부에서 인정평가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그램 평가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할때에 필요시 또는 요청시 인정평가 대상사업장의 평가요원, 노·사 대표자 또는 관계자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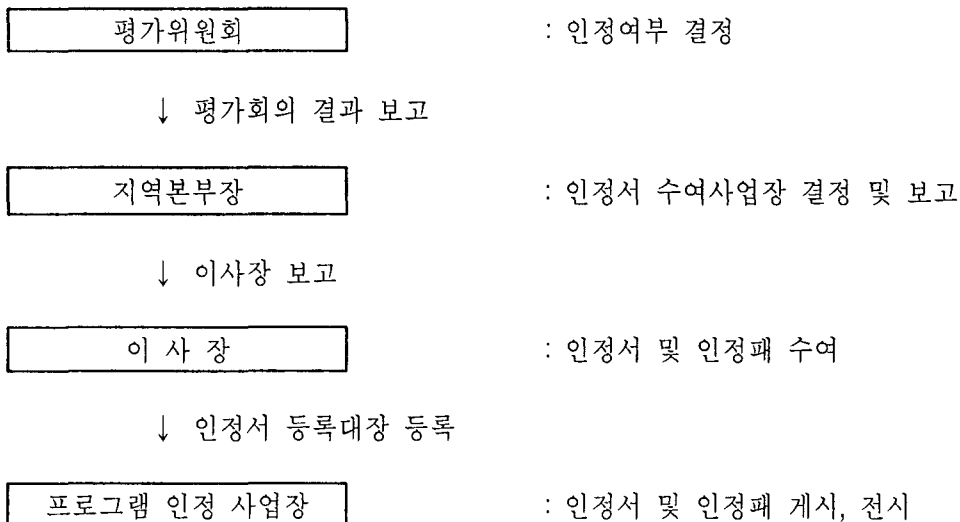
평가위원회는 각 지역본부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가위원회에는 전문기술 위원팀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역본부의 안전지원부장, 보건지원부장, 검사부장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안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본부 관내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 컨설팅기관의 관계자중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회는 인정여부 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회의 개최장소는 인정여부 결정사업장의 특성 및 회의진행의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본부, 해당 지도원 또는제 3의 장소중 위원장이 선정하여 결정한다.

3) 프로그램 인정서 발급

프로그램 인정시에는 인정서 및 인정패를 수여하는데 인정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프로그램 영문인정서의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문인정서를 추가 발급한다. 프로그램 인정패는 사업장 입구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토록 한다.

5. 인정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평가

1) 인정유효기간 연장

프로그램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인데 인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정유효기간은 최장 9년이며, 9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정유효기간 연장 불가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개선(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사후평가

프로그램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매년마다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사후평가 주기도래 30일 이전에 사후평가 실시계획을 사업장에 통보한다.

사후평가결과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개선(보완)을 2회까지 요청하고, 사후평가결과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인정의 취소

1) 인정취소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평가 또는 인정유효기간연장을 위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③ 공단으로부터 인정취소 사유에 대한 시정요구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내에 시정등을 하지 않는 경우
- ④ 인정신청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⑤ 기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발생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인정취소절차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때에는 인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인정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 취소 사업장의 사업주는 인정서 및 인정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업무흐름도

업 무 흐 름 도		주 요 내 용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신청인	○ 신청인 - KISCO 2000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		
프로그램 참여 합의	지역본부/지도원	○ 합의당사자 - 신청인, 공단 지역본부장/지도원장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 통보
↓		
평가팀 구성	지역본부/지도원	○ 평가팀 구성 - 평가요원 자격보유자 중 적정인원 선정
↓		
사업장 실태분석 및 기술지원(컨설팅)	지역본부/지도원	○ 실태분석 및 기술지원(수사) - 평가요원 및 컨설팅요원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평가	지역본부/지도원	○ 평가자 - 평가요원 - 실태분석 평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		
인정여부 결정	지역본부	○ 인정여부결정 - 평가위원회(위원장 : 전문기술위원팀장)
↓		
평가결과보고	지역본부→본부	○ 보고내용 - 회의개최결과 - 인정서 수여 대상사업장 명단
↓		
인정서 및 인정패 수여	이사장	○ 공고 및 홍보(월 1회이상) -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공고 및 홍보
↓		
사 후 평 가	지역본부/지도원	○ 인정유효기간 -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매1년마다 사후평가 실시

V. 평가요원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1. 평가요원 양성교육

1) 개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가 및 기술지원 관련 요원은 평가요원과 컨설팅요원으로 구분하는데, 이들 모두 평가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가요원 양성교육은 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데 총 교육시간은 40시간으로 5일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내용은 KISCO 2000 프로그램 운영기준, 기술지원 및 평가절차 및 요령, 평가결과서 작성 및 인정기준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양성교육신청

평가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수강신청서에 해당자격 및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원에 신청하면 된다.

3) 수료증 발급

평가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구축 기술지원시 컨설팅 요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2. 평가요원 자격 및 업무

1) 평가요원자격

평가요원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평가요원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자 중 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요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프로그램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평가요원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술사 또는 안전·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②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업무에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③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 ④ 기타 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전담부서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평가요원 업무

프로그램 평가요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평가계획의 수립
- ②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실시
- ③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의 작성
- ④ 기타 안전보건경영컨설팅 및 평가실시와 관련된 업무

3. 컨설팅요원 자격 및 업무

1) 컨설팅요원 자격

컨설팅요원은 컨설팅요원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자 중 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요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프로그램 구축 기술지원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컨설팅요원의 자격 및 경력기준은 평가요원 자격 및 경력기준과 동일하다.

2) 컨설팅 요원 업무

프로그램 컨설팅 요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계획의 수립
- ② 안전보건경영컨설팅
- ③ 기타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에 관한 업무※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운영 업무 흐름도

VI. 프로그램 인정사업장에 대한 혜택 부여 및 예상효과

1. 혜택부여

프로그램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 ① 인정유효기간동안 공단 지도대상 선정의 배제
- ② 초일류기업인증사업장 우선 추천
- ③ 산업안전보건대회시 정보 포상 및 안전경영대상의 우선 추천
- ④ 산재예방시설 용자 및 보조금 우선 지원
- ⑤ 사업장 요청시 외국 인증기관 인증서 병행 발급(BSI의 BS 8800 인증)
- ⑥ 기타 이사장이 부여하는 혜택

업 무 흐 름 도	주 요 내 용
<pre> graph TD A[양성교육 신청접수] --> B[양성교육 실시] B --> C[수료증 발급] C --> D[공단직원] C --> E[외부신청자] D --> F[평가요원 대상] E --> G[컨설팅 요원] F --> H[자격시험] H --> I[합격자] H --> J[불합격자] I --> K[자격증발급요청] J --> L[재시험] K --> M[자격증 발급] M --> N[직무교육]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직원, 외부신청자 ○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시간(5일)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운영규칙 별표3 ○ 발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수자 ○ 수료증 발급 명단보고(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원장 → 이사장 ○ 이수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직원 : 평가요원 자격시험 응시대상 - 외부신청자 : 컨설팅요원으로 활용 ○ 시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직원으로 교육이수자 ○ 시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 자격증발급 - 불합격자 : 재시험 실시 ○ 자격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원장 요청으로 이사장이 발급 ○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0시간 이상 실시 - 평가요원은 매년1회이상 직무교육 이수

2. 예상효과

KISCO 2000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①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 촉진
- ② 노·사 전원 참여로 준법정신 함양
- ③ 안전과 생산이 일체라는 의식 확산
- ④ 정량적 위험성 평가로 체계적 안전보건대책 수립
- ⑤ 기업안전문화정착의 기틀 마련
- ⑥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VII. 프로그램 인정제도 향후 추진방향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한데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는 이와 같이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평가 및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를 기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KISCO 2000 프로그램 인정제도를 한국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내실화, 전문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보다 많은 사업장에 확산·보급되도록 하여야 겠다.

또한, 외부 전문가 및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평가요원에 대한 양성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확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반 구축 강화에도 힘써나가야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조류인 안전보건, 환경, 품질경영시스템의 시스템 통합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업장에서는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의 추진이 가능해져 산업재해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 손실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